

부산광역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의 안 번 호 | 19 |
|------------|----|

제출년월일 : 1999. 4. 24

제 출 자 : 사 하 구 청 장

1. 제안이유

일부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규정을 보완하고, 사망한 자가 포상을 받을수 있는 근거를 마련

2. 주요골자

- 가. 포상의 종류중 “질서상”은 현재 “표창장”에 포함하여 시상하고 있어 이를 삭제 한다(안 제4조).
- 나. 표창장의 포상기준을 보완 및 추가(안 제5조).
- 다.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를 6급이하로 제한하고 포상기준 보완(안 제10조).
- 라.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2/3이상”에서 “과반수이상”으로 하향 조정(안 제13조 제4항).
- 마. 포상을 받을자가 사망한 때는 그 유족에게 대리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14조의2).
- 바. “별지4호서식”의 『자랑스런 구민상』 선정기준중 산업근로부문 추가(안 “별지1”).
- 사. “별표 1”의 포상의 용지는 현재와 맞지 않아 개정(안 “별지2”).

3. 관계법령

- 가. 상훈법 제33조, 정부표창규정 제18조
- 나. 부산광역시포상조례 제4조 및 제14조

부산광역시사하구포상조례증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포상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증 “질서상”을 삭제한다.

제5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신설한다.

2. 구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하거나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처리하여 타의 귀감이 된 경우
5. 교통·거리질서확립, 공중도덕 준수, 상도의 준수 및 거래질서 확립등 질서정착에 헌신한 경우
6. 자연보호운동 및 도시환경정비등 국민운동추진과 구정시책추진에 기여한 경우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증 “3년이상 부산광역시사하구내에 거주한 자”를 “추천일 현재 3년이상 계속 하여 부산광역시사하구내에 거주한 자”로 한다.

제8조 제4호증 “새마을사업”을 “각종 시책사업 추진”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6급이하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된 자
2. 구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사회 개발에 타의 모범이 된 자

제1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2항중 “표창장”을 “포상”으로 하며, 같은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3호서식에 의하되 제7조에 의한 자랑스런 구민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준한다
- ④포상용 용지와 기념휘장 규격은 [별표 1] 내지 [별표 2]에 의한다.

제13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없을 경우 해당부문은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4조제3항중 “자랑스런 구민상은 매년 시민의 날 기념 구민체육대회시 시상하고”를 “자랑스런 구민상은 매년 시민의 날 기념 구민행사시 시상하되, 불가시는 포상권자가 따로 정하는 날에 시상하고”로 하고, 같은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포상의 추서) 포상을 받을자가 사망한 때는 그 유족에게 이를 추서할 수 있다.

“별지4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표 1”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 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u>표창장, 자랑스런구민상, 질서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u>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자랑스런구민상은 효행선행상, 교육문화상, 산업근로상으로 세분하여 시행한다.</p> <p>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p> | <p>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u>표창장, 자랑스런구민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u></p> <p>.</p> |
| <p>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u>구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u> | <p>제5조(표창장)</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u>구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하거나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처리하여 타의 귀감이 된 경우</u>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양양에 솔선 수범한 경우 4.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자 |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u>구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하거나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처리하여 타의 귀감이 된 경우</u> 3. 4. |
| <p>(소 설)</p> | <p>5. 교통·거리질서 확립, 공중도덕 준수, 상도의 준수 및 거래질서 확립 등 질서 정착에 혁신한 경우</p> |
| <p>(신 설)</p> | <p>6. 자연보호운동 및 도시환경정비 등 국민운동 추진과 구정시책 추진에 기여한 경우</p> |

신·구 조 문 대 비 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u>제6조(질서상)</u> ① 질서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법 또는 공헌하여 질서 정착에 현저한 공이 있는 일반 구민에게 수여한다.</p> <p>1.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2. 공중도덕 준수 3. 상도의 준수 및 거래질서 확립 4. 자연보호운동 및 도시환경정화 5. 기타 도시질서 확립</p> <p>② 제1항의 질서상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공동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방법 및 절차등은 유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p> | (삭 제) |
| <p>제7조(자랑스런 구민상) 자랑스런 구민상은 3년이상 부산광역시사하구내에 거주한 자로서 별지 4호의 선정기준에 의거 구정발전, 사회복지증진, 근로정신 함양과 생산성 향상, 사회도의 양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구민에게 수여한다.</p> | <p>제7조(자랑스런 구민상)</p> <p>· · 추천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사하구내에 거주한 자</p> <p>· · · · ·</p> |

신·구 조문 대비 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1.~3.(생 략) 4. 새마을사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 제8조(감사장) 1.~3.(현행과 같음) 4. 각종 시책사업추진 |
| 제10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구 및 구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 제10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구 및 구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6급이하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된 자 2. 구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사회 개발에 타의 모범이 된자 |
| 제11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표창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생 략) (신 설) | 제11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하되 제7조에 의한 자랑스런 구민상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준한다 ②제1항의 포상은 ③(현행과 같음) ④포상용 용지와 기념휘장 규격은 [별표 1] 내지 [별표 2]에 의한다. |

신·구 조문 대비 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3조(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회)</p> <p>①~③(생 략)</p> <p><u>④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 <p>제13조(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회)</p> <p>①~③(현행과 같음)</p> <p><u>④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없을 경우 해당부문은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본다</u></p> |
| <p>⑤(생 략)</p> <p>제14조(포상시기) ①~②(생 략)</p> <p><u>③자랑스런 구민상은 매년 시민의 날 기념 구민체육대회시 시상하고 시상인원은 3개부문으로 하되 수상 적격자가 있는 부문만 시상한다.</u></p> | <p>⑤(현행과 동일)</p> <p>제14조(포상시기) ①~②(현행과 동일)</p> <p><u>③자랑스런 구민상은 매년 시민의 날 기념 구민행사시 시상하되, 불가시는 포상권자가 따로 정하는 날에 시상하고 .</u></p> |
| <p><u>④제6조에 의한 질서상은 연4회 매분기 의월에 시상하되 인원은 1회에 본상 1명, 장려상 2명으로 한다</u></p> <p>(신 설)</p> | <p>(삭 제)</p> <p>제14조의2(포상의 추서) 포상을 받을자가 사망한 때는 그 유족에게 이를 추서 할 수 있다.</p> |

신·구 조 문 대 비 표

| 현 행 | | 개 정 안 | |
|-----------------------------|---------|-----------------------------|--|
| <별지 제4호서식> 자랑스런 구민상 선정기준 | | <별지 제4호서식> 자랑스런 구민상 선정기준 | |
| 시 상 구 분 | 선 정 기 준 | 시 상 구 분 | |
| 효 행 선행상 | (생 략) | 효 행 선행상 | (현행과 같음) |
| 교 육 문화상 | (생 략) | 교 육 문화상 | (현행과 같음) |
| (신 설) | (신 설) | 창업 근로상 | <p><u>노사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근로자 또는 경영자로서</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 화합에 이바지 하여 지역사회 안 정에 기여한 분 ○ 기술개발 및 제도개선으로 원가 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분 ○ 투철한 사명감으로 회사 및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한 분 ○ 해외투자 및 수출에 힘써 외화 획득에 공이 많은 분 ○ 기업가 정신에 입각하여 기술개발과 투 자에 적극 힘써 기업발전을 이룬 모범 경영자 ○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구민 |

“별지 1”

(별지 제4호서식)

자랑스런 구민상 선정기준

| 시상부문 | 선정기준 |
|-------|---|
| 효행선행상 | <p>개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우이웃을 위해 다년간 헌신 봉사하고 재산을 사회에 회사하신 분 ○ 경제적으로 손실을 감내하면서 비영리법인을 다년간 운영해 오신 분 ○ 의로운 일을 해내고 부모를 극진히 봉양하고 있는 분 ○ 노부모 봉양 및 불치병 간호에 열과 성을 다해 주위의 칭송이 자자한 분 ○ 기타 효행과 선행에 있어 타 주민의 귀감이 되는 구민 |
| 교육문화상 | <p>교육문화 발전과 건전한 구민정서 함양을 위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세 교육과 선진교육 추구에 열과 성을 다해 헌신함으로써, 교육 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분 ○ 내고장 전통문화 발굴, 계승 등 향토의 명예를 빛내는데 기여한 분 ○ 기타 교육문화를 통하여 사회정의와 도의양양에 기여한 분 ○ 기타 타의 귀감이 되는 분 |
| 산업근로상 | <p>노사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근로자 또는 경영자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 화합에 이바지 하여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한 분 ○ 기술개발 및 제도개선으로 원가 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분 ○ 투철한 사명감으로 회사 및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한 분 ○ 해외투자 및 수출에 힘써 외화획득에 공이 많은 분 ○ 기업가 정신에 입각하여 기술개발과 투자에 적극 힘써 기업발전을 이룬 모범 경영자 ○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구민 |

(별지4호서식)

자랑스런 구민상 선정기준(개정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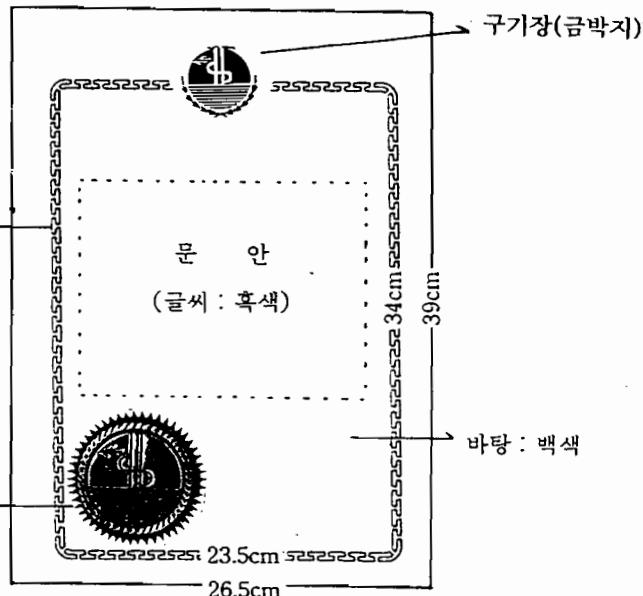
| 시 상 부 문 | 선 정 기 준 |
|---------|--|
| 효행선행상 |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우이웃을 위해 다년간 헌신 봉사하고 재산을 사회에 회사하신 분 ○ 경제적으로 손실을 감내하면서 비영리법인을 다년간 운영해 오신 분 ○ 의로운 일을 해내고 부모를 극진히 봉양하고 있는 분 ○ 노부모 봉양 및 불치병 간호에 열과 성을 다해 주위의 칭송이 자자한 분 ○ 기타 효행과 선행에 있어 타 주민의 귀감이 되는 구민 |
| 교육문화상 | <p style="text-align: center;">교육문화 발전과 건전한 구민정서 함양을 위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세 교육과 선진교육 추구에 열과 성을 다해 헌신함으로써, 교육 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분 ○ 내고장 전통문화 발굴, 계승 등 향토의 명예를 빛내는데 기여한 분 ○ 기타 교육문화를 통하여 사회정의와 도의양양에 기여한 분 ○ 기타 타의 귀감이 되는 분 |

“별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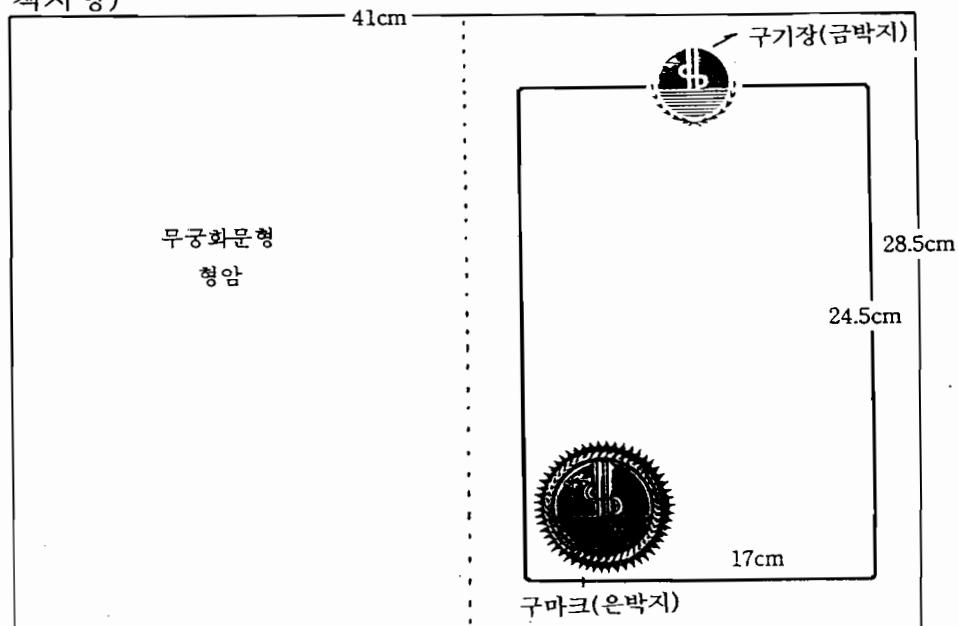
(별표 1)

포상용 용지 규격

(규격: 액자형)



(규격: 책자형)



(별표 1) ▶ 개정전

포상용 용지 규격

